#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

제정 2026. 10. 12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중부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전공학부(이하 “본 학부”라 한다)의 운영과 소속 학생의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자유전공”이란 본 학부에서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전공으로 전과하는 전공유형을 말한다.

② “자율전공”이란 본 학부의 진로·전공 탐색 중심 1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2학년 진급 후에도 본 학부 소속을 유지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는 전공유형을 말한다.

③ 이 규정에서 “전공”이란 학생이 전과하거나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하여 선택하는 학과, 학부 또는 전공 등의 학사단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전공유형 선택 및 전과)** ① 본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“자유전공” 또는 “자율전공” 중 하나의 전공유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자유전공 학생의 전공선택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자유전공 학생의 전과 시기, 허용 인원, 선발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전과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
④ 전공유형의 선택, 희망 전공의 탐색 또는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하여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⑤ 본 학부가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학생이 전과한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제4항에 따라 이수한 타 전공의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전공으로 전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본 학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사항
3. 학생의 전공선택 및 전과에 관한 사항
4. 학사관리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 제2장 조직

**제5조(구성)** ① 본 학부에 학부장, 자율전공 전공주임 및 전공지도교수를 둔다.

② 본 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6조(학부장)** 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1. 학부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설
2.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
3. 전공유형에 따른 학생 지도 및 학사관리
4. 학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자율전공 전공주임)** 자율전공 전공주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업무
2. 자율전공 학생의 수강, 성적,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학사지도와 관리
3. 그 밖에 자율전공 운영에 필요한 업무

**제8조(지도교수)** ① 본 학부는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학생의 학사관리와 진로・전공 지도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지정한 교원을 전공지도교수로 배정한다.

② 전공지도교수는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, 진로・전공 탐색 및 학사관리를 종합적으로 지도한다.

③ 자유전공 학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예비전공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. 예비전공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전공의 소속 교원으로서 해당 학생의 전공탐색과 전과를 지도・지원한다.

④ 자율전공 학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협력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. 협력지도교수는 학생이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하여 선택한 전공의 소속 교원으로서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와 이수를 지도・지원한다.

⑤ 전공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생활적응검사 및 적성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한 진로・전공 탐색 지도
2. 휴학, 복학, 재입학 및 그 밖의 학사제도에 관한 지도
3. 자유전공 학생의 전공선택 및 전과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과 관리
4. 자율전공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・이수 및 졸업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과 관리
5. 그 밖에 학생의 학사관리 및 진로・전공 지도에 필요한 사항

⑥ 예비전공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전공의 교육과정, 이수체계 및 진로에 관한 안내
2. 전과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및 학업계획에 관한 지도
3. 전공선택 및 전과 절차에 관한 상담과 지원
4. 그 밖에 자유전공 학생의 전공탐색 및 전과에 필요한 사항

⑦ 협력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설계 및 변경에 관한 지도
2. 학생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교과목 이수 및 학업계획에 관한 지도
3. 자율전공 교육과정의 이수상황 점검 및 졸업요건 충족에 관한 지원
4. 그 밖에 자율전공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와 이수에 필요한 사항

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(위원회의 설치)** 본 학부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전공학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본 학부 소속 교원 및 학부 운영과 관련된 교원 중에서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11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편·편성 및 개설에 관한 사항
2.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3. 타 학부 및 전공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자유전공 및 자율전공 학생의 배정에 관한 사항
5. 교육과정 운영성과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학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**제12조(세부지침)**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「복수(부)전공 학사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
③ 자유전공 학생의 전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전과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전과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